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호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①도 로 의 종 류	고속국도	②노 선 명	제1호 경부선
③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④통 행 료	따로 붙임
⑤시설물의명칭	남사진위영업소		
⑥통행료수납구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남사진위영업소)		
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한 모든 차량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⑧통행료수납방법	요금소 통과 시 현금(통행료 정산기를 운영하는 일반차로에서는 사용 불가, 안내문 수령 후 사후 납부 가능),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⑨통행료수납기간	2022년 6월 3일(14: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통행료				
		1종	2종	3종	4종	5종
남사진위	안성	1,600	1,600	1,600	1,900	2,000
	북천안	2,200	2,200	2,300	2,800	3,100
	천안	2,600	2,700	2,700	3,400	3,800
	목천	3,200	3,200	3,300	4,100	4,700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